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81
----------	-----

2024. 12. 1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11월 14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1월 26일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특수학교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 이유 검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³⁰⁾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노후한 시내버스 등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규정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버스 내 계단이 없고, 필요시 버스 내부와

30)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보도를 이어주는 경사판이 작동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승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어,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 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임

- 그러나 관련법은 노선버스에 한하여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교통약자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매일 등하교 시 이용하는 충청북도 내 11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50대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임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현황〉

(2024. 9. 기준)

구분	전체 통학버스 수				규모			전체 학생 수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	
	기본	리프트 차량	임차	계	45인승	30인승 이상	25인승 이상			
공립	청주혜원학교	4		2	6	6			287	178
	청주혜화학교		3		3	3			91	32
	이은학교	4	1	1	6	6			199	130
	충주혜성학교	3		2	5	3	1	1	114	105
사립	청주맹학교	1		3	4			4	67	28
	청주성신학교	4		2	6	6			233	155
	충주성심학교	2		3	5	1		4	69	12
	충주성모학교	2		1	3	1		2	56	28
	송덕학교		2		2		2		121	48
	청암학교	1	1	2	4	2	1	1	103	77
	꽃동네학교	2	1	3	6	5	1		156	124
합계	23	8	19	50	33	5	12	1,496	917	

- 이에, 도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이동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 본 조례는 도내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저상버스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 “특수학교” 및 “저상버스”의 정의는 관련 법 및 고시를 따르고 있으며, “통학차량”의 정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 조례의 지원 대상인 통학차량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통학버스로 한정되므로 조례에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는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과 관련된 교육감의 책무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내 11개 특수학교의 50대 통학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현황 및 보유 차량별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유사한 지원계획을 매년 중복 수립·시행하는 것보다는 학생 통학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저상버스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의 목적인 특수학교 통학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탑승 가능한 인원이 적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버스 증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도로 및 학교 진입로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함

*일반버스 승차정원 45명가량, 저상버스 승차정원 24~25명 가량

- 따라서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를 무조건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에 재량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재량권을 부여받은 교육감은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시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도로면의 상태 등에 따라 운행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고 경사로와 보도 연결 시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등 도로와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해당 도로나 시설의 소관인 충청북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규정은 적절하다고 보임

다. 종합 검토 의견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저상버스 도입을 노선버스에 한정하고 있고, 장애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시 이용하는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저상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 본 조례는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를 함으로써 이동권뿐만 아니라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저상버스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학교를 말한다.
2. “저상버스”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의 버스를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특수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저상버스 도입 등) ①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로 및 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9호, 2019. 12.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구조의 버스로써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말한다. 다만, 2층 저상버스의 경우 저상면의 넓이가 1층 차실 바닥의 35% 이상인 버스를 말한다.
2. “저상면”이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할 때 최초 밟게 되는 버스의 바닥을 말한다.
3. “경사판(Sliding Ramp)”이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발판을 말한다.
4.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란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말한다.
5. “통로”란 승객이 뒷부분좌석으로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말

하며, “뒷부분통로면“이란 차량의 중간문 이후부터 가장 뒤쪽 좌석까지 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2024. 5. 17.] [충청북도조례 제5119호, 2024. 5. 17., 타법개정]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 제5조에 따른 학교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 및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촌학교
2.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학교 통합 및 학교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공립유치원 통학여건 개선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구입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구입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저상버스 도입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통학차량을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 연도별 저상버스 구입비에 물가 상승률 5% 반영

나. 추계 결과: 6,334,583,676원

- 저상버스 구입비: 6,074,583,676원
 - 2025년: 418,233,200원 × 1대 = 418,233,200원
 - 2026년: 439,144,860원 × 4대 = 1,756,579,440원
 - 2027년: 461,102,103원 × 2대 = 922,204,206원
 - 2028년: 484,157,208원 × 3대 = 1,452,471,624원
 - 2029년: 508,365,069원 × 3대 = 1,525,095,206원
- 전기차 충전기시설: 10,000,000원 × 13개 = 130,000,000원
- 구조변경: 10,000,000원 × 13대 = 13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학생 통학 지원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재원 조달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의존 재원	소 계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